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45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원중,
김원태, 김인제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송도호,
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희,
이종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에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,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,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, 최근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복잡화 등을 토대로, 인공지능에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
- 이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하고,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인공지능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” 을 “관련한 사항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<u>관련한 사항</u>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48조(도시안전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관련한 사항</u>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-----.</p> |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